



최저임금제도는
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
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
지급하도록 **법으로 강제하는**
제도입니다.

2019. 1. 1. ~ 2019. 12. 31. 적용

NO.
01

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자는 어떻게 되나요?

- ▶ **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**됩니다. 다만,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, 선원법을 적용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.
- ▶ **근로기준법상 근로자(정규직, 파트타임, 아르바이트 학생, 외국인 근로자 등)는 모두 적용**됩니다. 다만,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.

NO.
02

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근로자는?

- ▶ **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(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외)**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**3개월 이내**인 근로자는 **최저임금액의 10%를 감액**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.
※ 다만, 단순 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(**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9(단순노무종사자)**)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습여부·계약기간에 관계없이 **최저임금 100%를 지급**하여야 합니다.

NO.
03

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과 산입되지 않는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?

- ▶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**매월 1회 이상 정기적**으로 지급하는 임금
- ▶ 다만, 아래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음

①

통화 이외의 것(현물)으로 지급하는 임금

②

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
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

-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
연장·야간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
임금,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, 그 밖에
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

③

①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의하여 산정하는
상여금 등의 25%(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)

② 식비, 숙박비,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
성질의 임금의 7%(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)

⇒ 위 금액에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 산입

⇒ 이후 5년에 걸쳐 최저임금에 미산입 되는 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
(2024년부터는 전부 산입)

※ '최저임금 월 환산액'이란?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
(1주 소정 근로시간 40시간, 월 환산기준 209시간(유급휴유 8시간)의 경우:
1,745,150원)

〈취업규칙 변경 절차의 특례〉

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
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 변경시 근로자의 과반수(과반수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)의 의견청취 필요

급여를 주거나 받을 때에는

최저임금

반드시 확인 !!!

고용노동부 홈페이지 (www.moel.go.kr)
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(www.minimumwage.go.kr)

고용노동부 국번없이
고객상담센터 **1350**

 **최저임금위원회**

NO.
04

최저임금액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 받기로 한 근로계약은 유효한가요?

- ▶ **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한 금액**을 임금으로 정하였다면 이렇게 정한 임금 부분은 **무효**이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.

NO.
05

최저임금 미달 여부의 판단방법은?

- ▶ 근로자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 받은 임금에서 “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”을 제외하고, 일·주·월급의 경우에는 이를 해당기간의 적용 기준 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후 시간당 최저임금액과 비교
- ※ 월급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시 사용하는 월 적용기준 시간(유급주휴시간 포함)
: 주당 소정 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는 209시간

최저임금에 산입되는
임금의 범위

=

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매월1회
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

-

이중 최저임금에
산입 하지 않는 임금

NO.
06

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?

- ▶ 사용자는 ‘①**최저임금액**, ②**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**, ③**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**, ④**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연월일**’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.
- ※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등을 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NO.
07

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?

- ▶ **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**에 처해지거나, 이 두 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.

쉽게
알아보는

“최저임금 계산법”

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인 근로자가
2019년 2월 월급 1,975,500원을 받는 경우

월급명세서

기본급	1,500,000원
직무수당	150,000원
식대	50,000원
교통비	50,000원
시간외수당	100,500원
상여금	125,000원
급여계	1,975,500원

※ 상여금은 기본급의 연 100%
(1,500,000원을 12개월로 나눠서
매월 지급)



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

기본급	1,500,000원
직무수당	150,000원
상여금	0원*
식대·교통비	0원**
계	1,650,000원

*상여금 125,000원중 2019년 월환산액
1,745,150원의 25% 초과금액

**식대·교통비 100,000원중 2019년
월환산액 1,745,150원의 7% 초과금액



추려낸 임금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

1,650,000원 ÷ 209시간
≒ 7,895원 < 8,350원
∴ 최저임금 위반

